

## 농지대장 개편 Q&A



### Q.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?

A. 2022년 2월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,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6일 까지 가능합니다.

※ 2월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구분을 변경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격증명서가 발급됨

### Q.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?

A.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,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

※ 농지원부 폐쇄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, 폐쇄기관에서 조회·발급 신청 가능

### Q. 농지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?

A.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,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※ 정부24로 발급 가능하며,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·구·읍·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

### Q.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?

A.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,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, 본인 외 개인정보는 \*\*\*처리되어 발급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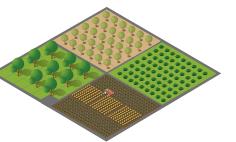
※ 2024년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

##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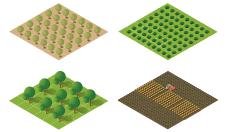


### 하나. 1천m<sup>2</sup>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·발급됩니다.

#### (현행) 1천m<sup>2</sup> 이상 경작·재배 시 작성



#### (개선) 농지 필지별 작성



※ 주의사항 : 농업인 기준 변동 없음

- 현행 농지원부는 1천m<sup>2</sup>(시설 330m<sup>2</sup>)이상 경작·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,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움
-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 별도확인 필요



### 둘.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
#### (현행)

#### 작성신청 : 농가주 주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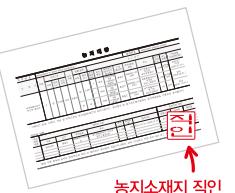
#### (개선)

#### 작성신청 : 전국 어디서나

※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·이용현황 확인 필요  
(최대 10일 소요, 신청서류 미비시 추가 서류보완기간 발생)



### 셋.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


#### (현행)

#### 농가주 주소지(정부24 포함) 발급 \* 관외농지 포함시 최대 10일내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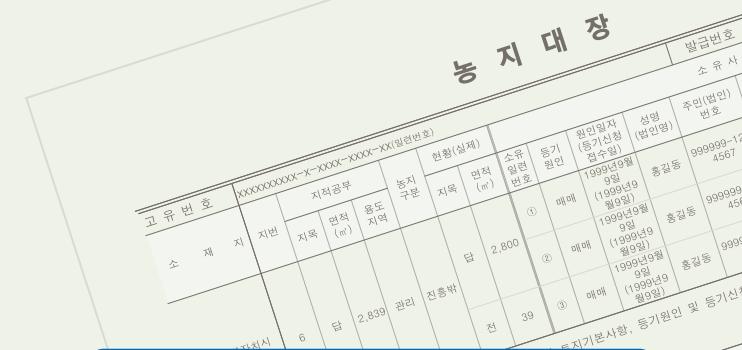
#### (개선)

#### 전국 어디서나(정부24 포함) 발급 \* 경작사실확인일 1년 초과시 최대 10일내 발급

※ 무인민원발급기는 시·구·읍·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



## 농지원부가 '농지대장'으로 개편됩니다.



### ▣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방안

- ① 공부 명칭 변경 : 농지원부 → **농지대장**
- ② 작성기준 변경 : 농업인(세대) → **농지필지(지번)**
- ③ 작성대상 변경 : 농지 1천m<sup>2</sup> 이상 → **모든 농지**
- ④ 관할행정청 변경 : 농업인 주소지 → **농지 소재지**
- ⑤ 관리방식 변경 : 직권주의 → **신고주의**  
\* 임대차 계약 발생·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



농림축산식품부



**① 농지원부는 **필지별**로 작성됩니다.('22.4.15)**

현 행

농업인(세대)  
기준 작성

개 선

농지 필지(지번)  
기준 작성

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(지번)별로 작성됩니다.

\* 세대원, 동거인, 주재배작물 등 삭제/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,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

**② 농지원부는 **모든 농지**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.('22.4.15)**

현 행

농업인(세대)  
1천m<sup>2</sup> 이상의 농지

개 선

전체 농지

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.

**③ 농지원부는 **농지 소재지 행정기관**에서 작성·관리 합니다.('22.4.15)**

현 행

농업인 주소지  
관할 행정청

개 선

농지 소재지  
관할 행정청

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.

**④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도 **농지대장**으로 변경합니다.('22.8.18)**

현 행

농지원부

개 선

농지대장

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.

**⑤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**신고 의무화** 됩니다.('22.8.18)**

현 행

행정청이 직권으로  
공부 작성

개 선

농지 임대차 등  
변경 신고 의무화

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·변경·해제 되거나, 농축산물 생산시설\*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\* 축사, 곤충사육사,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농막 등

